

영국보험시장에서 슬립의 역할과 법적 지위*

The Role and Legal Status of the Slip in London Insurance Market

이 우 영**

Lee Woo-Young

영국의 런던보험시장의 경우 해상·항공·재보험 등의 기업보험이나 기타 대형위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종목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중개인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때 보험중개인은 보험청약서와는 다른 슬립(slip)이라는 독특한 서면을 사용한다. 슬립은 보험계약의 기본조건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보험청약자가 부보 의뢰한 바에 따라 보험중개인이 이를 작성한다. 보험중개인이 보험자에게 슬립을 제시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청약이며, 보험자가 슬립에 자기의 인수비율(line)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것은 계약청약의 승낙이다. 즉 보험자가 슬립에 서명한 때에 완전하고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더라도 슬립 자체에 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슬립은 계약의 증거로 인정되며, 보험자의 계약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다만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이 발행되어야 슬립이 증거로 인정된다.

※ 국문 색인어 : 보험슬립, 보험중개인, 보험증권, 슬립, 커버 노트

I. 머리말

영국의 런던보험시장의 경우 해상·항공·재보험 등의 기업보험이나 기타 대형위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종목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중개인을 통하여 거래가 이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조교수, wyrhee@ks.ac.kr

루어진다. 이 때 보험중개인은 보험청약서와는 다른 슬립(slip)이라는 독특한 서면을 사용한다.

슬립은 과거 영국의 로이즈보험시장에서 해상보험만을 취급하던 시대부터 사용 해온 것으로서 로이즈시장의 거래관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슬립에 의한 거래는 다른 보험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로이즈시장 및 국제보험인수협회(IUA: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로 대표되는 회사시장에서 슬립에 의한 거래가 일반화 되어 있다.

슬립은 보험계약의 기본조건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보험청약자가 부보 의뢰한 바에 따라 보험중개인이 이를 작성한다. 슬립에 의한 거래는 주로 대형위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보험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보험중개인은 고객인 보험청약자의 위험을 전부 인수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보험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보험중개인이 보험자에게 슬립을 제시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청약이며, 보험자가 슬립에 자기의 인수비율(line)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것은 계약청약의 승낙이다. 즉 보험자가 슬립에 서명한 때에 완전하고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슬립에 의하여 청약과 승낙이 같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또한 계약 종료 시까지 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고 슬립만으로 보험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슬립은 독특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또 슬립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로이즈시장 특유의 거래관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시장의 관습을 최대한 존중하는 영국법원에서도 슬립에 의한 독특한 거래관습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보험시장은 영국 보험시장과 여러 면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해상보험의 경우 영국의 보험증권과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금융시장 개방의 과정에서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던 보험중개인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우리의 많은 보험회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영국의 보험시장에서 재보험거래를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슬립에 의한 보험거래과정과 그 과정에 존재하는 독특한 거래관습을 살펴보고, 슬립에 관련되는 중요한 법적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영국 보험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보험업계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슬립의 의의

1. 런던보험시장에서의 슬립의 역할

영국의 런던보험시장에서는 해상, 항공, 책임, 재보험 등과 같은 기업보험이나 대형위험을 취급하는 보험거래는 일반적으로 보험중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상법상의 중개인과는 달리 영국법상의 보험중개인은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며,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상기의 보험종목 등과 관련하여 고객인 보험계약자의 의뢰에 따라 보험중개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인 보험청약서와는 성질을 달리 하는 슬립(slip)이라는 서면을 사용한다¹⁾.

슬립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의 목적, 담보위험,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기본조건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보험중개인이 이를 준비·작성하여 보험자에게 제시한다. 슬립은 18세기 이후 로이즈보험시장에서 해상보험을 인수할 때 사용하기 시작하여 다른 보험종목으로 확대된 것이므로 해상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로이즈시장에서의 독특한 거래관습과도 무관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슬립을 통한 보험거래는 기업보험이나 대형위험을 취급하는 보험에서 이루어지므로 특정 보험자 단독으로 전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보다는 복수의 보험자에 의하여 공동보험의 형태로 인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런던보험시장에서 슬립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예(例)로는 로이즈시장과 국제보험인수협회(IUA: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²⁾로 대표되는 회사시장을 들 수 있다. 손해보험 부문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로이즈

1) 주로 생명, 상해, 화재, 도난, 자동차보험 등과 같은 가계보험에서는 보험청약서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Ivamy, E. R. Hardy,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Butterworths, 1986, p.116.)

2) 해상·항공·운송보험을 주로 취급하던 런던보험자협회(ILU: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와 해상보험 이외의 손해보험·재보험을 주로 취급하던 런던국제보험 및 재보험시장협회(LIRMA: London International Insurance and Reinsurance Market Association)를 통합하여 1998년 12월에 국제보험인수협회가 설립되었다.

(Lloyd's of London)와 국제보험인수협회는 2000년 11월에 로이즈보험중개인위원회(LIBC: Lloyd's Insurance Brokers' Committee)와 함께 기존 시장질서의 개혁을 위한 '2001년 런던시장원리'(LMP 2001: London Market Principles 2001)를 제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정형화된 표준슬립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다³⁾.

이 표준슬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001년 1월에 도입된 이후 2003년 11월 LMP BRAT(Broker Reform Action Team) 슬립, 2005년 4월 LMP 슬립, 2006년 6월 MR(Market Reform) 슬립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법적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약체결과과정에서 하나의 슬립은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중개인이 처음 준비하는 슬립을 원 슬립(original slip)이라 하고, 여러 보험자와의 접촉이 끝난 후 최종 인수 및 회계업무에 사용되는 것을 인수마감 슬립(signing or closing slip)이라 한다. 슬립에 의한 보험거래는 컴퓨터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때의 슬립을 전자슬립(electronic slip)이라고 한다⁴⁾.

보험중개인이 슬립을 제시하면 보험자는 인수여부를 검토한 후 인수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슬립상의 총 보험금액에 대한 자기의 인수비율(line)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대형위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복수의 보험중개인에게 보험가입을 의뢰할 수 있는데, 이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붙이고자 하는 총 금액에 대하여 각각의 보험중개인이 보험가입을 의뢰받은 비율을 '인수요청비율'(order)이라 한다⁵⁾.

보험중개인이 보험자에게 슬립을 제시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청약이며, 보험자가 슬립에 인수비율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것은 승낙이다. 즉 보험자가 슬립에 서명한 때에 완전하고 유효한 계약이 성립한다⁶⁾.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슬립의 조건

3) 당시 시장개혁프로그램의 업무기구로서 LMP Programme Office가 설립되었는데, 2006년 이후 이는 Market Reform Programme Offic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단체도 로이즈시장협회(LMA: Lloyd's Market Association), 런던시장보험중개인위원회(LMBC: London Market Insurance Brokers' Committee), 국제보험인수협회, 로이즈(법인으로서의 로이즈조합) 등으로 변경되었다.

4) Schoenbaum, Thomas J., *Key Divergencies Between English and American Law of Marine Insurance : A Comparative Study*, Cornell Maritime Press, 1999, p.66.

5) Rambeth, R. J., *Templeman on Marine Insurance*, 1986, Pitman, p.17.

6) O' May, Donald & Hill, Julian, *O' May on Marine Insurance*, Sweet & Maxwell, 1993, p.33.

과 일치하는 보험증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상 일정한 보험종목에서는 계약의 종료 시까지 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보험자의 서명이 조건부이거나 또는 승낙을 의도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슬립에의 서명이 승낙을 구성한다는 원칙은 수정된다. 즉 보험자는 자신의 서명이 구속력 있는 승낙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슬립에 표시할 수 있다⁷⁾.

이 점과 관련하여 완전한 슬립(full slip)과 견적슬립(quotation slip)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견적슬립은 단순히 보험자에게 보험료의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며, 이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므로 보험자가 서명을 하더라도 승낙으로 인정될 수 없다⁸⁾.

한편 영국에서 17C~18C에 걸친 해상보험의 초기에는 슬립이 단순한 보험각서(Memorandum of Insurance)에 불과하고 계약 자체를 표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으나, 그 후 슬립을 계약의 증거로 인정한 판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과거 국고수입을 위하여 슬립의 사용이 인지세관련 제정법에 의하여 금지된 적이 있었다. 1807년에 로이즈의 한 보험인수회원이 슬립의 사용에 대하여 기소되었다는 기록도 있지만, 그러한 제정법상의 제한이 항상 엄격하게 집행된 것 같지는 않다⁹⁾.

슬립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과거 영국에서 시행했던 각종 보험증권에 대한 인지세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상보험계약을 비롯한 각종 보험계약에 부과되었던 인지세는 1959년 재정법(Finance Act 1959)에 의하여 간소화되었다가 1970년 재정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1970년에 인지세가 폐지되기까지 슬립의 법적 지위, 특히 계약의 기본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슬립을 인지세 부과 대상인 보험증권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인지세가 폐지된 이후 그러한 논의의 중요성은 상실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7) Merkin, Robert, *Insurance Contract Law*, Vol. 1, Kluwer Publishing, 1992, p. A.3.2-06.

8) loc. cit ; R. J. Rambeth, op. cit., p.18.

9) Dover, Victor, *A Handbook to Marine Insurance*, Witherby & Co. Ltd., 1982, p. 110.

1959년 재정법 이후로 효율성과 경제성의 관점에서 정식 보험증권이 요구되지 않는 일정한 보험종목에 대하여 슬립을 보험증권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슬립에 보험자의 서명과 함께 슬립증권임을 표시하는 문언을 첨부함으로써 이른바 슬립증권(slip policy)으로 전환하는 관습이 발전하였다. 다시 말하면 보통 슬립은 최종적으로 보험증권에 대체되지만, 그러한 보험증권으로의 대체가 없을 때에는 통상 슬립증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런던보험시장에서는 보험증권이 최후까지 발행되지 않고 슬립이 계약당사자의 합의를 나타내는 유일한 서증(書證)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슬립증권이라고 하는 것이다¹⁰⁾.

일반적으로 슬립증권에는 해당 보험자가 인수비율에 따라 손해보상책임을 진다는 것과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정식 보험증권을 발행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즉 슬립증권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통상의 슬립과 동일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¹¹⁾.

2. 인지세제도와 슬립

프랑스와의 전쟁을 대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제정된 1694년 인지세법(Stamp Act 1694)에 의하여 최초로 보험계약에 인지세가 부과되었지만, 보험시장에 광범위하고 지속적 영향을 끼친 것은 1795년 인지세법부터였다. 인지세는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었으며,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항해보험과 기간보험으로 구분하여 각각 보험금액 별로 세분화된 데 반해 다른 보험종목들은 통합하여 단일의 인지세를 부과하였다. 이하에서 슬립에 영향을 끼친 인지세관련 입법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¹²⁾.

10) Bennett, Howard N., "The Role of the Slip in Marine Insurance Law",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1994. 2, pp.94~95.

11) Parks, Alex L., *The Law and Practice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Vol. 1, Cornell Maritime Press, 1987, p.32.

12) Bennett, Howard N., op. cit., pp. 95~101 ; Michael, Mustill & Jonathan, Gilman,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Vol. I, Stevens & Sons, 1981, pp. 9~14.

1795년 인지세법에 따르면 과세물건은 거래 자체가 아니라 서류이며(제1조), 인지세 부과 대상인 모든 보험계약은 인쇄 또는 수기(手記)되어야 하고 보험증권으로 불리는 것이어야 한다(제11조). 또 동법 제11조에서는 보험증권에는 보험료, 담보위험, 보험자 성명 및 보험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null and void)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14조에서는 그 내용을 인쇄 또는 수기한 서면에 적법한 인지를 첨부하지 않는 한 보험에 관한 어떠한 계약이나 합의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정히 작성되지 않고 인지도 첨부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관계하는 보험자, 보험중개인 또는 보험계약자는 형사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슬립에 의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동법 제18조에서는 보험자가 슬립에 서명한 날부터 3영업일 내에 보험증권을 작성하고(execute)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은 인지를 첨부하지 않은 슬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실무계에서는 슬립을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보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인지를 첨부한 보험증권을 작성·발행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14조에서는 보험증권을 작성할 때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제 보험증권을 작성하여야 하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

Mead v. Davison¹³⁾에서는 유효한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증권의 작성은 서로 별개의 관념이므로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도 보험증권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인지를 첨부한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슬립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814년 인지세법에서는 인지가 첨부된 백지의 용지를 사전에 구입하여 보험자가 이에 의하여 보험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슬립의 법적 효력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았는데, Xenos v. Wickham¹⁴⁾에서의 상고심에서 Willes판사는 슬립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일부가 아니라 장래의 보험계약 성립을 위한 보험청약서에 불과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슬립을 계약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3) (1835) 3 Ad. & El. 303.

14) (1867) L.R. 2 H.L. 296.

1867년 관세 및 내국세법(Customs and Inland Revenue Act 1867)은 기존의 인지세법상의 모든 관련 규정을 폐지했지만, 실제 내용 면에서는 기존의 인지세법과 큰 차이가 없다. 동법 제7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은 보험증권에 명시되어야 유효하며, 보험증권에는 담보위험, 보험자 성명, 보험금액이 기재되어야 하고, 탈루(omission)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동법 제9조에서는 인지를 첨부하지 않은 보험증권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자가 보험을 인수한 후에는 보험증권에 인지를 첨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슬립을 사용한 보험계약에 관한 3일의 유예기간을 폐지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지세법보다 더 엄격한 면이 있다.

1867년 법 이후 슬립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선도적 판례인 *Ionides v. Pacific Fire & Marine Insurance Co.*¹⁵⁾의 제1심에서 Blackburn판사는 최초로 슬립을 보험계약으로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다. 적하예정보험에 관한 이 건에서 Blackburn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실무상 그리고 해상보험 종사자들이 이해하는 바에 따라 슬립은 당사자 사이에 보험조건 및 보험료를 결정하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약이다. 어떠한 당사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슬립에 의하여 합의한 조건을 이탈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이탈한다면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신용상 및 장래의 영업상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

1867년 법 제7조에 따르면 해상보험에 관한 어떠한 계약이나 합의도 보험증권에 명시되지 않는 한 무효로 한다. 동법 제9조에 따르면 어떠한 보험증권도 정히 인지를 첨부하지 않는 한 증거로 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슬립은 명백하게 해상보험계약이며, 또한 명백하게 보험증권이 아니므로 이러한 입법의 취지에 비추어 슬립은 무효로 된다. 즉 슬립은 보통법 또는 형평법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슬립은 중요한(material) 것인 한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15) (1871) L.R. 6 Q.B. 674, 684-685.

Blackburn판사의 판결은 항소심¹⁶⁾에서 추인되었는데, Kelly판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슬립은 당사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계약을 증명·부인 또는 설명하거나, 또는 해당 보험증권의 해석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증거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증권의 작성 시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는 인정된다.」

그 후 이러한 판례의 흐름을 반영한 1891년 인지세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은 보험증권에 명시되어야 유효하고, 보험증권에는 담보위험·보험자 성명·보험금액이 기재되어야 한다(동법 제93조). 동법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서명 후의 인지 첨부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2항에서는 £100의 벌금을 납부하면 후일 인지를 첨부한 보험증권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험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는 1959년 재정법에 의하여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된다. 동법은 보험금액 별로 세분화하였던 해상보험계약에 대한 인지세를 기타 보험계약(생명보험 제외)과 마찬가지로 6펜스로 통일하였고, 해상보험계약에 적용되는 1891년 인지세법 제92조 내지 제97조 및 1906년 해상보험법(이하 MIA 로 부름: Marine Insurance Act 1906) 제23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폐지하였다. 그 후 1970년 재정법은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에 대하여 인지세를 폐지하였다.

특히 해상보험의 경우 1959년 재정법에 의하여 큰 변화가 일어났다. MIA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 중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제1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즉 보험의 목적 및 담보위험(제2항), 보험기간(제3항), 보험금액(제4항), 보험자 성명(제5항)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해상보험증권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고(MIA 제24조 제1항), 보험의 목적을 명료하게 표시하면(제26조 제1항) 된다.

16) (1872) L.R. 7 Q.B. 526.

3. 보험증권과 슬립

가. 해상보험의 경우

슬립과 보험증권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상보험과 그 이외의 손해보험(non-marine insurance)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MIA상의 다음 조항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제21조 보험증권이 발행되는지를 묻지 않고 해상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보험자에 의하여 승낙된 때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인지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청약이 승낙된 시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슬립, 커버 노트 또는 기타 관습적 서류를 인용할 수 있다.」

「제22조 다른 제정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상보험계약은 이 법에 따라 해상보험증권에 표시되지 않는 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증권은 계약이 체결된 때 또는 그 후에 작성 및 발행될 수 있다.」

「제89조 정히 인지가 첨부된 보험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소송절차에서 슬립 또는 커버 노트를 인용할 수 있다.」

1970년 재정법에 의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인지세가 폐지되었으므로 현재에는 제21조의 “인지가 첨부되지 않더라도”(although it be unstamped) 및 제89조의 “정히 인지가 첨부된”(duly stamped) 등의 문구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영미법상 해상보험계약을 포함한 모든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자 불요식계약이다.¹⁷⁾ 보험증권의 발행은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계약의 유효성에도 영향

17) 달리 말하면 영미계약법상 보험계약은 날인계약(contract by deed)이 아니라 단순계약(simple contract)이다. 단순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 외에도 약인(consideration)이 서로 제공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의 경우 통상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과 보험자의 위험부담이 약인으로 제공된다. 단순계약은 불요식계약이지만, 일정한 서면증서(written instrument)가 발행되는 단순계약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보험계약이나 운송계약이며, 보험증권 또는 선하증권이 그러한 서면증서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서면증서의 발행은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며, 그러한 서면증서가 발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이다.

을 미치지 않는다. 보험중개인이 보험자에게 슬립을 제시하는 것은 계약청약이며, 보험자가 슬립에 서명하는 것은 계약청약의 승낙이다. 즉 보험자가 슬립에 서명함으로써 유효한 해상보험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슬립이 전액 인수된 때부터 해상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MIA 제21조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MIA 제22조에 따르면 해상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한 슬립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해상보험증권 없이 슬립 자체에 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자의 계약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슬립은 도의적 계약 내지 명예계약(honour contract, contract in honour)이다¹⁸⁾. 그러나 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더라도 해상보험계약이 무효로 되거나(void) 또는 위법한(illegal) 것으로 되지는 않으며,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당사자도 해상보험계약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다¹⁹⁾.

MIA 제22조에서 해상보험계약은 해상보험증권에 표시되지 않는 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법 제21조에서 보험증권이 발행되기 전에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계약의 증거로서 슬립을 인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묘한 일이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²⁰⁾.

첫째, 보험자가 슬립에 서명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들은 상세하고 완전한 계약조건을 반영하는 보험증권의 발행을 예정하고 의도한다는 점이 동법에서 확인되고 있다.

둘째, 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슬립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계약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 동법의 규정은 인지세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Ionides v. Pacific*

18) Colinvaux, Raoul, *The Law of Insurance*, Sweet & Maxwell, 1984, pp. 20~21.

19) Thomas, Rhidian, "Perspectives on the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The Modern Law of Marine Insurance*, 1996, LLP, pp. 10~11, 15. 실무상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상보험증권을 발행·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 Schoenbaum, Thomas J. op. cit., p. 73.

Fire & Marine Insurance Co.에서의 Blackburn판사의 판결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MIA 제22조는 이 판결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과거 영국에서는 슬립이 인지세법상의 보험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891년 인지세법 제91조에서는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을 성립시키거나, 성립시키기로 합의하거나 또는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되는 모든 서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슬립을 보험증권으로 보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해상보험에 대하여 1959년 재정법 제30조 제2항에서 커버 노트, 슬립 및 기타 증서를 인지세의 부과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해당 증서들을 1891년 인지세법상의 보험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수의 학설은 여전히 슬립을 해상보험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²¹⁾.

MIA 제22조는 과거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낡은 규정임이 명백하다. 1959년 재정법은 해상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을 간소화하였고, 1970년 재정법은 해상보험증권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였다. 통상의 슬립은 1959년 법에 의하여 간소화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하므로 해상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더라도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특히 1959년 법 이후 슬립증권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 슬립을 해상보험증권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슬립은 MIA 제23조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슬립의 조건과 일치하는 보험증권의 발행을 강제할 수 있는 부수계약(collateral contract)을 항상 성립시킨다²²⁾.

MIA 제22조의 해석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MIA 제89조와 관련하여 슬립과 보험증권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²³⁾.

21) *ibid.*, pp.73~74 ; Mustill, Michael & Gilman, Jonathan, *op. cit.*, 9-12 ; Thomas, Rhidian, *op. cit.*, pp.3~4 ; Dover, Victor, *op. cit.*, pp.110~111 ; O' May, Donald & Hill, Julian, *op. cit.*, 1993, p.34 ; Legh-Jones, Nicholas, *MacGillivray on Insurance Law*, Sweet and Maxwell, 2003, pp. 122~123.

22) Bennett, Howard N., *op. cit.*, p.118.

「해상보험계약은 해상보험증권에 표시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해상보험증권의 발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해상보험증권은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체결 후에 작성·발행될 수 있다.」

나. 비해상보험의 경우

현재 해상보험 외에 슬립을 사용하는 다른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정식 보험증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슬립에 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슬립은 보험증권을 발행하겠다는 도의적 내지 명예상의(in honour) 단순한 약속이 아니다. 슬립은 그 자체로서 구속력 있는 보험계약이며, 보험증권과 동일하게 보험자를 구속한다²⁴⁾.

해상보험이든 아니든 슬립이 보험계약을 완전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슬립의 형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슬립은 보험자의 계약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며, 정식 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더라도 슬립에 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해상보험의 경우는 그 예외로 한다.

슬립과 보험증권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보험증권의 정정이나 영미계약법상의 구두증거배제의 원칙(parol evidence rule)의 적용 문제와 연결된다. 이는 후술하기로 한다.

4. 커버 노트²⁵⁾와 슬립

가. 보험자 발행의 커버 노트

보험자가 발행하는 커버 노트는 보험계약의 청약 시부터 그에 대한 승낙이나 거절이 확정될 때까지의 단기간동안 보험자가 보험청약자에 대하여 부보대상위험을

23) Dover Victor는 실무상 통상의 업무과정에서 보험증권은 손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보험자의 요구가 있으면 발행되고 있고, 보험자는 슬립에 의하여 증명되는 계약에 자기의 명예를 걸고 구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이론상의 상아탑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Victor, Dover, *ibid.*, p. 111.)

24) Ivamy, E. R. Hardy, *op. cit.*, pp.117~118 ; Colinvaux, Raoul, *op. cit.*, p. 21 ; Mustill, Michael & Gilman, Jonathan, *op. cit.*, p. 13.

잠정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표시한 서면으로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성립하는 구속력 있는 보험계약이다. 이러한 잠정적 보험보호(temporary, interim or provisional cover)는 주보험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서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나, 통상 커버 노트의 발행·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잠정적 보험보호는 주로 화재, 자동차, 도난 및 상해보험에서 발전된 거래관습이지만, 근래에는 생명보험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²⁵⁾.

실무상 잠정적 보험보호에 관한 커버 노트는 권한을 위임받은 보험자의 대리인이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보험자의 수권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상관없다. 실무상 백지의 커버 노트를 다수 위탁받은 대리인은 잠정적 보험보호의 커버 노트를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고 본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이를 발행하며, 로이즈시장의 경우에는 로이즈보험업자의 집합체인 로이즈신디케이트로부터 인수한도(binding authority)를 수여받은 대리인(이를 cover holder라 함)이 이를 발행한다. 영국보험법상 보험중개인은 계약체결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행동하지만, 보험중개인이 보험자로부터 인수한도를 수여받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대리인이 된다²⁷⁾.

25) cover note는 보험자가 발행하는 것(temporary cover note)과 보험중개인이 발행하는 것(broker's cover note)으로 나눌 수 있다. 양자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 하므로 동일한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논문에서는 '커버 노트'라 부르기로 한다.

26) Legh-Jones, Nicholas, op. cit., p. 124. 우리 상법 제638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에서도 승낙의제 및 승낙 전 보험사고의 담보에 의한 잠정적 보험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도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조 제3항 및 제9조 제2항, 장기손해보험표준약관 제1조 제3항 및 제8조 제3항 등에서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표준약관 제9조 제2항에서는 보험자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기간의 始期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소급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의 본질은 소급보험으로써 보험자의 승낙에 의한 주보험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한 후 나중에 승낙하여 주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기간의 始期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소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법상의 잠정적 보험보호는 주보험계약의 성립여부와는 무관한 독립된 보험계약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실과 유사한 예로서, 영국법상의 잠정적 보험보호는 드물게 커버 노트가 발행되지 않고 보험기간의 始期를 보험청약일로 소급함을 약정하고 있는 보험증권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 경우에는 주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의 조건에 의하여 잠정적 보험보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하다.(Merkin, Robert, op. cit., pp.A.3.3-05-06.)

잠정적 보험보호의 커버 노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보험청약자에게 실질적으로 잠정적 보험보호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단순한 보험료영수증과는 구별된다. 예컨대 명칭이 '영수증' (receipt)으로 되어 있더라도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영수하는 대가로 보험자가 합의된 바에 따라 부보대상위험을 잠정적으로 부담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으면 잠정적 보험보호의 커버 노트로 인정된다²⁸⁾.

일반적으로 잠정적 보험보호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청약자에게 커버 노트를 교부하거나 구두의 합의를 한 때에 개시한다. 보험자 책임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커버 노트에 확정적인 보험보호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르며,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보험자가 주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는 경우 그 거절의 통지가 보험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잠정적 보험보호의 효력은 종료된다. 어느 경우든 주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면 잠정적 보험보호의 효력이 종료된다²⁹⁾.

이상에서 살펴본 잠정적 보험보호의 커버 노트는 여러 면에서 슬립과 구별된다. 우선 슬립을 사용하는 보험종목과 이 커버 노트가 발행되는 보험종목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슬립은 주로 해상·항공·재보험 등에서 사용되지만, 이 커버 노트는 화재·자동차·도난·상해보험과 같이 보험청약서를 사용하는 보험에서 발행되는 것이다.

슬립은 보험중개인이 이를 작성하고 보험인수가 완료된 후에도 보험중개인이 계

27) 로이즈시장에서는 반드시 로이즈중개인을 통하여 거래를 해야 한다. 해상·항공·재보험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형위험을 취급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로이즈에 등록하고 특정 신디케이트로부터 인수한도를 수여받은 coverholder가 자기의 인수한도 내에서 여러 위험을 수집한 후 이를 로이즈중개인을 통하여 부보한다. 이 때 로이즈중개인은 슬립이 아니라 보험청약서를 사용한다. coverholder는 로이즈보험업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통 계약체결, 보험료 징수, 보험서류 발행, 소액클레임 처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로이즈중개인이 제시한 보험청약서를 보험자가 접수하면 coverholder는 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잠정적 보험보호의 커버 노트를 보험청약자에게 발행하며, 보험자는 이에 구속된다. (E. R. Hardy Ivamy, op. cit., pp. 103~104.)

28) Legh-Jones, Nicholas, op. cit., pp.125~126.

29) ibid., pp.127~129 ; Ivamy, E. R. Hardy, op. cit., pp.105~107 ; Robert, Merkin, op. cit., p.A.3.3-02.

속 소지하지만, 이 커버 노트는 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작성하여 보험청약자에게 교부한다. 특히 슬립에 의한 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주보험계약이지만, 이 커버 노트에 의한 계약은 보험청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잠정적 보험보호에 관한 계약으로서 이는 주보험계약과는 독립된 계약이다.

다만 해상보험을 제외하고 슬립은 보험증권이 발행되기까지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고, 슬립에 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커버 노트와 슬립은 유사하다. 이때의 슬립은 보험청약서와 이 커버 노트의 성질을 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보험중개인 발행의 커버 노트

보험중개인 발행의 커버 노트(broker's cover note)는 보험중개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보험청약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이다. 보험중개인은 이에 의하여 스스로 보험인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며, 보험자도 보험중개인 발행의 커버 노트에 구속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중개인은 보험청약자의 지시를 정당하게 이행하였고, 그 지시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보험청약자에게 담보하는(to warrant)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약속한 보험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중개인은 보험청약자에게 담보위반(breach of warranty)의 책임을 진다³⁰⁾.

커버 노트가 보험계약자의 지시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보험중개인의 의무이다. 만일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자의 지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일정 한도의 보험료율로 부보할 것을 지시 받았지만 그 보험료율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보험중개인은 보험가입을 성사시키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중개인은 법률가가 아니며, 법이 결정되지 않은 사정 하에서 착오를 일으키더라도 보험중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중개인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보험중개인이 커버 노트의 발행과정에서 특정한 법의 적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은 하였으나 그 설명한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30) Legh-Jones, Nicholas, *ibid.*, p. 126 ; Ivamy, E. R. Hardy, *ibid.*, p.108.

하지 않은 경우, 보험중개인이 설명한 법적 지위에 기하여 제기된 소송으로부터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³¹⁾.

보험계약자가 보험중개인에게 이미 체결된 계약내용의 변경을 지시하는 경우 보험중개인은 계약내용의 변경과정에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때 숙련된 보험중개인이란 어떻게 계약내용을 변경했을 것인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감정이 요구될 수 있다³²⁾.

한편 영국법상 보험중개인은 계약체결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행동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험자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허용된다. 즉 쌍방대리(dual agency)가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슬립을 사용하지 않는 보험종목에서 보험중개인은 한명 또는 복수의 보험자로부터 수권 받아 보험청약자에게 잠정적 보험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보험중개인이 발행하는 커버 노트는 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발행하는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보험중개인 발행의 커버 노트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다. 만일 보험중개인이 보험자의 수권범위를 벗어나거나 또는 전혀 권한 없이 잠정적 보험보호의 커버 노트를 발행하는 경우 보험중개인은 보험청약자에게 권한담보 위반(breach of warranty of authority)의 책임을 진다. 영미 대리법상 타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계약의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묵시적으로 담보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대리인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은 경우 그 무권대리인은 권한담보 위반에 의한 상대방(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이것이 영미 대리법상 권한담보의 법리이며, 이 담보위반의 책임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이다³³⁾.

보험중개인 발행의 커버 노트는 그 책임의 법적 성격 및 주체에 있어 잠정적 보험보호의 커버 노트와 구별된다. 보통 보험중개인 발행의 커버 노트는 슬립을 사용하는 보험에서 슬립에 의한 계약체결이 완료된 후에 발행된다.

슬립은 구속력 있는 계약이지만, 보험중개인 발행의 커버 노트는 단순한 부보확인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1) Dover, Victor, op. cit., pp. 115~116.

32) Walton Chapman v. (1833) 10 Bing. 57.

33) Legh-Jones, Nicholas, op. cit., p.1054.

Ⅲ. 슬립에 관한 거래관습

1. 슬립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과정

런던보험시장에서 보험중개인이 슬립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험중개인이 고객으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을 의뢰받으면 보험중개인은 먼저 보험에 붙일 사항에 관하여 슬립을 작성한다. 이 슬립의 기재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에 의해 보험증권이 작성된다. 보험중개인은 이 슬립을 로이즈의 보험업자이든 보험회사이든 인수를 희망하는 다수의 보험자에게 회람시킨다. 이 때 최초로 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자를 대표보험자(leading underwriter, leader)라 한다. 로이즈의 경우에는 보험인수대리인 또는 보험인수대리인이 선임한 간사보험자(active underwriter)가 슬립에 인수비율(line)을 기재하고 서명한다³⁴⁾. 보험회사를 대표하는 보험자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슬립에 인수비율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뒤 보험을 인수한다³⁵⁾.

슬립에 기재된 부보예정 보험금액이 모두 인수되면 보험중개인은 슬립에 의거하여 보험증권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보험중개인은 본인인 보험계약자에게 슬립의 조건에 따라 부보했음을 확인하는 보험인수증을 발행한다³⁶⁾.

로이즈와 국제보험인수협회의 경우 과거에는 각각 로이즈보험증권서명부(Lloyd's Policy Signing Office)와 보험증권부(Policy Department)에서 로이즈

34) 구체적으로 로이즈의 경우에는 일명 'line stamp'로 불리는 고무스탬프를 사용하여 간사보험자의 명칭, 신디케이트 번호, 인수비율, 보험인수 참조사항 및 날짜 등을 슬립에 표시한다.

35) Lewis, Stephen & Woloniecki, Jan, "Lloyd's: Brokers and the London Insurance Market", *Lloyd's, the ILU, and London Insurance Market*, Practising Law Institute, 1988, p.42.

36) Bianca, Daniel M., "The Working of the London Market", *Lloyd's, the ILU, and the London Insurance Market*, PLI, 1990, p.63.

보험업자와 회원을 대리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였으나, 2001년 5월 이후에는 이들 기관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 XIS(Xchanging Ins-sure Services)가 양자의 보험증권 발행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보험중개인이 특별약관을 기재하거나 첨부한 보험증권 및 슬립을 XIS에 제시하면 이 회사에서는 보험증권을 검토하고, 인수보험자를 기재한 일람표가 첨부된 슬립과 비교한 뒤 스탬프로 서명한다. 이 회사의 서명은 해당 보험자가 직접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보험증권의 발행 후에는 위험의 종류, 각 보험자의 인수비율, 보험료 총액, 보험중개인 서명 등을 기재한 목록을 각 보험자에게 회람시킨다. 동일한 위험이 로이즈와 보험회사로 나누어 인수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보험증권이 발행된다.

보험증권의 발행 후 담보위험 또는 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슬립에 추가로 기재하거나 또는 새로운 슬립을 작성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이 때 대표보험자가 다시 최초의 협의대상이 된다. 이후 보험증권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개정된다³⁷⁾.

슬립이 처음 보험중개인에 의하여 준비될 때에는 보험료율이 삽입되지 않는다. 보험중개인과 합의되면 보험료율은 대표보험자에 의하여 삽입되며, 대표보험자는 그 합의된 보험료율에 따른 인수비율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다³⁸⁾. 슬립에 반대의 명시가 없는 한 처음 기재된 보험료율은 확정적(firm)이며, 중개수수료(brokerage)와 디스카운트를 위한 관습상의 공제가 허용된다.

일단 보험료율에 관한 합의가 불가능하게 되면 보험중개인은 잠정적으로 보험자

37) Mustill, Michael & Gilman, Jonathan , op. cit., pp. 106~107.

38) 슬립상에 보험자의 책임개시일 또는 보험료 지급 등과 같은 일정한 조건은 계약체결 후에 약정되어야 한다고 기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대표보험자와 추후 약정함' (t.b.a. L/U : to be agreed with the leading underwriter)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된다. 보험료율에 관한 한 보험자는 추후 약정할 보험료율에 따라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장래에 보험료를 산정하기로 합의하며, 보험료를 산정하기 전에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하여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약정은 화재, 생명, 상해보험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Nicholas, Legh-Jones, op. cit., p.1039.)

의 견적을 승낙하고, 그 요율을 슬립에 배서한 후 “보험계약자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그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전신약어인 ‘S.A.N.R.’ (subject to approval, no risk)을 표시한다. 이후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를 접촉하여 추인(confirmation)을 얻기 위한 시도를 한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면 보험중개인은 이를 해당 보험자에게 통지한다. 이 추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험자는 이에 구속되지는 않는다³⁹⁾.

예컨대 적하보험에서 파손위험(breakage)에 대하여 부보되는 유리제품 등의 위험물과 같이 고율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견적된 후, 사고 없이 해당 위험이 종료될 때에는 견적된 확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반환한다는 합의가 종종 이루어진다.

경우에 따라 보험자는 탐탁지 않은 위험이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위험의 일부를 보유한다면 이를 인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슬립에는 “.....%를 무보험상태로 하며, 보험계약자가 그 위험을 부담할 것을 담보함”(Warranted per cent uninsured and at assured’s risk)이라는 문구가 배서된다⁴⁰⁾.

General Accident Fire & Life Assurance Corp. v. Tanter(The Zephyr)⁴¹⁾의 제1심에서 Hobhouse판사는 계약체결과정의 마무리단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보험중개인에 의하여 슬립이 보험자에게 제시되는 것은 얼마동안이나 계속되는 가. 이 단계의 종료를 나타내는 명백한 행위는 없다. 다음 단계도 역시 보험중개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보험중개인은 인수마감슬립(signing slip)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원 슬립의 모든 조건과 인수보험자 및 하향 조정된 인수비율을 포함하는 재작성된(retyped) 슬립이다. 이 서류는 대표보험자에게 제시되고, 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인수마감슬립이 원 슬립과 일치하는 지를 검토하는 것은 대표보험자의 책임이다.……

39) Dover, Victor, op. cit., pp.114~115.

40) ibid., p.115.

41) (1984) 1 Lloyd’s Rep. 58.

한편 보험중개인은 결산서류(closing document)를 준비해야 한다. 이는 계정상으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회계실무이다. 결산서류는 해당 보험자에 대한 계산을 포함하며, 그 보험자에게 전달된다. 통상의 업무과정상 이 결산서류는 대표보험자 이후에 보험을 인수한 후속보험자가 취득하는 실제의 인수비율에 대한 최초의 정보이다.

결산서류는 1개월 내지 3개월 이내에 준비·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나는 보험인수가 이루어진 연도의 마감일에 결산이 행해진 후에야 보험자가 실제의 인수비율을 알게 된 경우가 있음을 들었다. 물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사고 또는 클레임을 알려주는 서류상의 계산을 통하여 또는 그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실제 인수금액 또는 인수비율을 알게 될 것이다.」

2. 슬립에 관한 주요 거래관습

가. 초과인수와 인수비율 하향조정

슬립을 사용한 계약체결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이 있다. 즉 보험중개인은 원래 의도한 인수금액을 초과하여 위험을 인수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며, 그에 따라 여러 보험자들이 서명한 총인수비율이 100%에 이르도록 각 보험자에 대하여 비례적으로(pro rata) 인수비율을 하향조정할(write or sign down)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⁴²⁾. The Zephyr⁴³⁾의 제1심에서 Hobhouse판사는 이러한 관습의 존재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슬립의 초과인수(over-subscription)가 시장에서 용인되고 있다. 이는 보험중개인의 업무가 더 많아짐을 의미한다. 보험중개인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42) 예컨대 슬립에 기재된 인수비율의 합계가 총 150%인 경우, 1%를 인수한 보험자는 최종적으로 0.6667%를 실제 인수하는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인수비율 하향조정에 의하여 감소된 인수비율을 마감인수비율(closed or signed line)이라 한다.(Rambeth R. J., op. cit., p.18.)

43) (1984) 1 Lloyd's Rep. 58.

보험자를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중개인은 이를 이점(利點)으로 간주한다.

첫째, 보험중개인은 자신의 사업을 보다 많은 보험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둘째, 초과인수 및 그에 따른 인수비율 하향조정을 예상하여 보험자들은 더 높은 인수비율을 기재하기 때문에 슬립의 표면상 인수비율이 더 양호해진다. 이와 같이 더 높은 인수비율이 기재됨에 따라 특히 슬립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험중개인의 중개업무가 보다 더 용이해진다. 즉 최초의 보험자가 높은 인수비율을 기재하면 그 후의 보험자도 역시 높은 인수비율을 기재할 가능성이 크게 된다. 셋째, 이러한 결과로서 보험중개인은 보다 더 신속하게 100%의 인수비율에 도달할 수 있다.…… 넷째, 보험중개인의 고객이 협정보험가액(insured value)을 증가시키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슬립이 초과인수되면 이를 보다 더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관습은 보험중개인에게 이익이 된다. 초과인수는 보험자들에게는 인기가 없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보험자들은 인수를 원하는 위험에 대하여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 적게 인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중개인에 대한 초과인수 및 인수비율 하향조정의 권리 부여는 슬립에 인수비율을 기재한 뒤에 '인수비율을 확정함' (to stand) 등과 같은 문구를 부가하는 보험자에 의하여 부인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인정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슬립의 초과인수는 보험중개인이 부보를 요청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보험중개인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험중개인이 가능한 한 많은 보험자와 접촉하여 보다 용이하게 위험을 인수시킬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 슬립의 초과인수에 대하여 통상 보험자는 자기의 인수비율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는 데 동의한다⁴⁴⁾.

슬립의 초과인수에 따른 인수비율 하향조정은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즉 초과인수된 비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각 보험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

44) Victor Dover는 시장에서 슬립의 초과인수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보지 않으며, 습관적으로 그러한 거래과정을 반복하는 보험중개인은 신용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지만, 실무상 슬립의 초과인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Dover, Victor, op. cit., p.115.)

결되었으므로 그 인수비율의 하향조정은 기술적으로 계약위반의 연속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 분석을 적용하면, 인수비율의 하향조정은 허용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자는 초과된 인수비율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추정된다. 여기서 보험중개인이 초과인수의 과실(negligence)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보험료 초과분을 지급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인수비율 하향조정의 관습은 General Reinsurance Corporation v. Forsakringsaktiebolaget Fennia Patria⁴⁵⁾의 제1심에서 Staughton판사에 의하여 최초로 상세하게 검토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법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Staughton판사는 이 관습에 의하여 인수비율 하향조정에 법적 지위가 부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이 견해는 항소법원에서도 추인되었다. 다만 (i) 보험자의 책임에 대하여 이를 비율로 표시하지 않고 일정 금액으로 표시하는 경우 또는 (ii) 보험자의 책임이 비율로 표시되었지만, '인수비율을 확정함' (to stand) 등과 같이 해당 비율을 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구를 부가하는 경우에는 인수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보험중개인의 관습상의 권리는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⁴⁶⁾.

나. 인수비율조정 예시

슬립의 초과인수를 의도하는 보험중개인은 통상 보험자에게 인수비율조정 豫示(signing indication)를 한다. 인수비율조정 예시란 의도하고 있는 초과인수비율과 하향조정에 따른 실제 인수비율의 예상치를 보험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서 보통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⁴⁷⁾.

보험중개인이 제공하는 인수비율조정 예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즉 초과인수의 정도가 동 예시에서 표시된 것보다 더 크면 보험자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만큼 인수하지 못하게 되고, 반면 초과인수의 정도가 동 예시에서 표시된 것

45) (1982) 1 Lloyd's Rep. 87.

46) Merkin, Robert, op. cit., p.A.3.2-20.

47) Rambeth, R. J., op. cit., p.18.

보다 더 작으면 자신이 원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인수하게 된다⁴⁸⁾.

인수비율조정 예시는 The Zephyr⁴⁹⁾에서 Hobhouse 판사(제1심)와 항소법원에 의하여 검토되었다. 재보험에 관한 이 건에서 보험중개인은 A보험자(대표보험자)에게 300%의 초과인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시하였고, 이에 따라 A보험자는 자신이 슬립에 서명한 비율의 1/3을 실제 인수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A보험자는 보험중개인의 인수비율조정 예시에 기초하여 그가 실제로 인수한다고 믿었던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슬립에 서명하였다.

그 후 이 슬립은 B 및 C보험자에게도 제시되었다. 이들 보험자는 보험중개인으로 부터 인수비율조정 예시를 받지 못하였지만, A보험자의 명백한 초과인수에 기초하여 A보험자가 인수비율조정 예시를 받았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실제 의도한 것보다 더 높은 인수비율로 슬립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보험중개인은 300%의 인수에 실패하고, 불과 25%의 인수를 달성하는 데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세 보험자는 총 88.48%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보험자들은 인수비율조정 예시의 오류에 의하여 슬립에 기재한 인수비율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Hobhouse 판사는 보험자들은 각자 인수한 총 인수비율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Hobhouse 판사는 인수비율조정 예시가 슬립에 편입되었으며 따라서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보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인수비율조정 예시에 관해서는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허위의 인수비율조정 예시에 따른 보험중개인의 책임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⁵⁰⁾.

한편 Hobhouse 판사는 인수비율조정 예시를 한 바에 따라 실제 인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보험중개인에 대하여 세 명의 보험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Hobhouse판사는 보험중개인과 A보험자 사이에 슬립에 기재된 인수비율의 1/3로 A보험자의 책임을 감소시키는 조건의 부수계약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인하였으나, 인수비율조정 예시

48) Merkin, Robert, op. cit., p.A.3.2-21.

49) (1984) 1 Lloyd's Rep. 75 ; (1985) 2 Lloyd's Rep. 529.

50) Malcolm, A. Clarke,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LLP, 1989, p.212.

의 과정에서 보험중개인의 과실이 있으며 따라서 보험중개인은 A보험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⁵¹⁾. 이 건에서 B 및 C보험자는 인수비율조정 예시를 받지 못하였으며, A보험자가 인수비율조정 예시를 받았을 것이라는 신념에 기초하여 초과인수를 하였지만, Hobhouse판사는 B 및 C보험자의 지위를 A보험자와 구별하지 않고 A보험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판시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보험중개인이 A보험자에게 한 인수비율조정 예시를 다른 보험자에게도 그대로 믿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Hobhouse판사의 판결을 번복하였다. 즉 항소법원은 보험중개인으로부터 명시적인 인수비율조정 예시를 받지 않은 B 및 C보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장의 관습상 대표보험자에 대한 인수비율조정 예시는 모든 후속인수 보험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B 및 C보험자 측의 주장은 강하게 부인되었다⁵²⁾.

다. 원보험계약 체결 전의 재보험가입

한편 *The Zephyr*⁵³⁾의 제2심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전에 보험중개인이 보험자에게 재보험가입⁵⁴⁾을 권유하는 관습이 법원의 주목을 받았는데, Mustill판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원보험자가 특정 위험의 인수여부 및 인수 시의 인수금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 그는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험을 인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중개인은 특정 보험자에게 원보험의 인수와 동시에 재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면

51) 이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부수의견으로서, 이러한 성질의 문제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계약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개념상 300%의 인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묵시적 약속(implied undertaking)의 위반(즉 주보험계약에 수반하는 부수계약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보험중개인에게 지도록 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웠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52) Clarke, Malcolm A., op. cit., pp.213~214; Robert, Merkin, "The Duties of Marine Insurance Brokers", *The Modern Law of Marine Insurance*, LLP, 1996, p.301.

53) (1985) 2 Lloyd's Rep. 529, 533.

54) 이때의 재보험은 주로 임의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을 가리키며, 임의재보험은 원보험과 마찬가지로 슬립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 보험자에게 원보험의 인수를 설득하는 것이 더 용이해질 것이다. 따라서 원보험 가입을 지시받은 보험중개인이 추후 원보험을 인수하고 그 인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보험에 붙이기를 원하는 자에게 재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약속(binding promise)을 얻기 위하여 사전에 잠재적 재보험자에게 접근하는 관습이 발전되었다.

재보험자는 슬립에 인수비율을 기재함으로써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되며, 그 슬립에는 보험의 목적·위험의 성질 및 보험가액이 확정된다. 그러나 그 슬립에는 원보험자는 확정되지 않으며, 또 확정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보험중개인이 잠재적인 재보험자에게 접근하는 단계에서는 원보험이 인수될 것인지 또는 인수된다면 누구에게 인수될 것인지, 원보험자가 재보험 가입을 원할 것인지, 재보험 가입을 원한다 하더라도 보험중개인이 접촉한 재보험자와 거래를 할 것인지 또한 그 재보험자가 제시한 계약조건에 따를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험중개인이 재보험자로부터 인수약속을 얻게 되면 보험중개인은 특정 보험자에게 원보험의 인수와 동시에 재보험에 가입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습을 인정한 Hobhouse판사(제1심) 및 Mustill판사에 따르면 원보험계약과는 달리 잠재적 재보험자가 슬립에 서명하는 것은 재보험계약의 청약이다. 보험중개인이 전달한 잠재적 재보험자의 청약에 대하여 원보험자가 그 조건대로 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보험중개인에게 지시하면 재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되며, 그 시점에서 재보험계약이 성립한다⁵⁵⁾.

55) 원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재보험자와 먼저 교섭하는 경우 원보험자가 확정되지 않은 사정 하에서 보험중개인은 누구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Hobhouse판사는 전통적 견해에 따라 보험중개인은 재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원보험자의 대리인으로 행동한다고 판시하였다.(Merkin, Robert, op. cit., 1996, pp. 298~302.)

Ⅳ. 슬립에 관한 몇 가지 법적 문제

1. 일부 인수된 슬립과 조건변경

가. 일부 인수된 슬립의 법적 지위

보험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보험중개인이 대표보험자 이후의 후속보험자 (following underwriter)와 접촉 중, 요컨대 인수 도중의 슬립의 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고객의 마음이 변하여 거래중지를 요구하거나, 보험중개인이 100%의 인수를 소화할 수 없거나 또는 보험자가 후일 슬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하여 General Reinsurance Corporation v. Forsakringsaktiebolaget Fennia Patria⁵⁶⁾에서 항소법원의 Kerr판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슬립에서 인수된 각 인수비율에 대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재보험자 사이에 그 정도에 따라(pro tanto)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자신의 인수비율에 구속된다. 다만 슬립이 초과인수된 때에는 보험자는 하향조정된 인수비율에 구속된다.」

즉 이 건에서 항소법원은, 슬립에의 서명은 예외 없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계약을 구성하며, 어떤 당사자도 일방적으로 슬립을 철회(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슬립이 전액 인수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슬립이 전액 인수되기 전에 보험중개인이 전액 인수의 불가능함을 표명하거나 또는 보험계약자 스스로 거래를 중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때까지 인수한 보험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56) (1982) Q. B. 1022. ; Lowry, John & Rawlings, Philip, *Insurance Law : Doctrines and Principles*, Hart Publishing, 2005, pp.139~140.

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슬립에 보험자의 서명이 이루어지면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해제할 수 있는 명백한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 성립한다⁵⁷⁾.

마찬가지로 슬립상의 각 보험자의 서명은 개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약을 성립시키므로 각각의 보험자는 슬립에의 서명 당시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구속된다⁵⁸⁾.

즉 슬립은 개별계약의 집합(a bundle of individual contracts)을 구성한다.

다른 관점에서, 복수의 보험계약자와의 계약은 그들 각각과 체결한 개별적인 계약을 구성하는지 아니면 그들 모두와의 합동계약(joint contract)을 구성하는지 문제가 된다. 만일 모든 보험계약자와의 합동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면 보험계약자 중 한 명의 계약위반에 의하여 선의의 다른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도 보험자에게 해약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또는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Arnould에 따르면 엄격한 의미에서 보험계약자들이 피보험재산에 대하여 공동의 피보험이익(joint interest)을 가지는 경우에만, 즉 보험계약자들이 피보험재산의 공유자인 경우에만 합동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특정 보험계약이 합동계약인지의 여부는 해석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복수의 피보험이익을 인수하는 보험계약은 각각의 피보험이익을 부분한 각 당사자와의 개별계약으로 해석된다⁵⁹⁾.

나. 슬립의 조건변경

후속인수 보험자의 조건변경에 의하여 선행인수 보험자가 이익을 얻는 것은 금지

57) 실무상 로이즈시장에서는 슬립이 전액 인수되든 일부만 인수되든 위험이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슬립의 철회(취소)에 동의하며, 이미 위험이 개시한 경우에도 일정한 보험료(time-on-risk premium)를 받고 슬립의 철회에 동의하는 관습이 있다.(Schoenbaum, Thomas J., op. cit., p.69.)

58) 일부 인수된 슬립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Jaglom v. Excess Insurance Co.(1972) 2 Q.B. 250에서 Donaldson판사는 부수의견으로서, 보험자의 슬립에의 서명은 그 인수비율에 구속되겠다는 청약이며, 보험계약자는 이를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일부 인수된 슬립을 철회(취소)할 수 있으며, 각 보험자는 서로 다른 조건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견해는 시장의 관습과 선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General Reinsurance Corporation v. Forsakringsaktiebolaget Fennia Patria에서 항소법원에 의하여 거부되었다.(Legh-Jones, Nicholas, op. cit., p.1038.)

59) Mustill, Michael & Gilman, Jonathan, op. cit., p.224.

된다⁶⁰). 즉 각 보험자는 각각의 인수 시에 합의한 조건에 구속된다. 그러나 실무상 이러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험조건과 보험료율에 관한 모든 교섭은 실질적으로 보험중개인과 대표보험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통상의 업무 과정상 후속인수 보험자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The Zephyr⁶¹의 제1심에서 Hobhouse판사는 “실무상 후속인수 보험자는 청약된 보험 계약의 주요 조건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판단하는 것은 주로 자신이 인수하기를 원하는 인수비율의 크기이다”라고 말하고 있다⁶².

법적으로는 후속인수 보험자에게 조건변경이 허용되지만, 대표보험자의 전문 지식 및 둘 이상의 부보조건이 포함된 보험계약에 대한 시장에서의 거부감 등이 실무상의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슬립이 반드시 최종적인 모든 계약조건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⁶³.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슬립의 변경은 보험중개인과 대표보험자의 합의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대표보험자조항(leading underwriter clause)이 슬립에 삽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⁶⁴. Barlee Marine Corporation v. Mountain(The Leegas)⁶⁵에서 Hirst판사는 동 조항은 대표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슬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기타 모든 인수보험자들을 구속하는 효과를 가

60) 일반적으로 후속인수 보험자의 조건변경은 선행인수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선행인수 보험자는 그 변경사항을 자기의 계약에 반영하여 보험계약자와의 원래 합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61) (1984) 1 Lloyd's Rep. 58.

62) 실무상 드물게 후속인수 보험자가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보험중개인은 선행인수 보험자 에게 슬립을 다시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도의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자가 계약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선행인수 보험자는 이전의 서명에 의하여 구속되기 때문이다.(O' May, Donald & Hill, Julian, op. cit., pp.33~34.)

63) Bennett, Howard N., op. cit., pp.106~107.

64) 현재 로이즈시장과 국제보험인수협회의 경우 기존의 다양한 대표보험자조항을 통합하고 그 의미를 명료화한 ‘일반보험자협정’(GUA: General Underwriters Agreement)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Market Reform Slip에서는 GUA를 채택하는 경우 대표보험자의 동의만을 요하는 변경, 모든 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변경, 변경 시점까지의 선행인수 보험자들만의 동의를 요하는 변경 등 3 가지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65) (1987) 1 Lloyd's Rep. 471.

진다고 판시하였다. 즉 모든 후속인수 보험자는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대표보험자조항의 범위 내에서 대표보험자의 행위에 구속된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조항은 보험자들 사이의 합의이므로 보험계약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⁶⁶⁾.

특정 보험자가 슬립에 서명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첫째, 슬립에 기재된 담보내용에 충분한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많은 부분을 계약 법상의 원칙에 위임하게 되는 경우, 둘째 보험자가 직접적 보상책임을 부인하는 조항을 슬립에 부가하는 경우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⁶⁷⁾.

2. 보험계약내용의 증거로서의 슬립

가. 보험증권과 슬립의 정정

슬립은 보험계약조건의 증거로서 인정된다. 이는 訂正(rectification) 및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parol evidence rule)과 관련된 문제이다. 영국의 판례법에서는 슬립과 보험증권 사이에 불일치사항이 있는 경우 보험증권의 정정을 위한 소송에서 슬립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⁶⁸⁾.

슬립에의 서명부터 보험증권의 작성까지는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이 슬립의 조건과 보험증권의 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슬립의 조건이 우선하며, 그에 따라 보험증권의 정정이 인정된다. 즉 슬립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면 슬립의 조건과 일치하는 보험증권의 발행을 강제할 수 있는 부수계약(collateral contract)이 항상 성립한다⁶⁹⁾.

물론 정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슬립상의 합의내용을 轉記할 때에 착오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즉 보험증권의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그 보험증권상의 조항이 계약체결 당시의 당사자들의 진실한 의사를 올바르게 표시하지 못

66) Merkin, Robert, op. cit., 1992, p. A.3.2-19.

67) Bennett, Howard N., op. cit., p.107.

68) Symington & Co. v. Union Insurance Society of Canton Ltd.(No. 2) (1928) 34 CC. 189.

하는 경우 법원은 보험증권의 정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현재에는 당사자 사이의 실제 합의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보험증권을 정정하고, 그 합의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슬립을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다⁷⁰⁾.

이러한 정정의 경우 외에 슬립은 보험증권상의 담보조건과 모순되도록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즉 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증권의 설명이나 해석을 위하여 슬립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슬립에 표시된 담보조건과 보험증권의 문언이 서로 다를 때에는 보험증권의 문언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의 변화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슬립이 항상 우선한다⁷¹⁾.

특히 로이즈시장에서의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슬립과 보험증권이 일치하지 않지만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일 계약내용이 무엇이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슬립을 유력한 문서(dominant document)로 본다. 이에 대하여 *Banque Sabbag SARL v. Hope*⁷²⁾에서 Mocatta판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로이즈시장에서의 거래는 슬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대표 보험자는 보험증권 사본을 보관하지 않으며 이를 한 번도 보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갱신의 시기가 도래한 때에 대표보험자에게 제시되는 것은 보험증권이 아니라 새로운 슬립과 이전 연도의 슬립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69) Bennett, Howard N., op. cit., p.118. 참고로 우리 상법에서도 보험증권의 정정이 인정된다. 상법상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으로서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진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2. 10. 27. 선고, 92다 32852 참조) 계약내용에 대한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641조에서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1월을 내리지 않는 기간) 내에 한하여 보험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정한 약관을 이의약관이라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의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험증권상의 기재내용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은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70) 특히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이러한 관습은 MIA 제89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Michael, Mustill & Jonathan, Gilman, op. cit., p.36.)

71) Bennett, Howard N., op. cit., pp.107~109.

72) (1972) 1 Lloyd's Rep. 253, 263.

한편 슬립 자체가 당사자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정정할 의사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면 슬립을 정정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실제 그러한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슬립의 조건은 보험중개인과 대표보험자 사이에 협의되며, 여타 보험자에게 제시되기 전에 문서화되므로 후속인수 보험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서류에 기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슬립이 후속인수 보험자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보험자들은 슬립의 조건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며 가급적 정정의 경우를 피하고자 한다.

보험계약자가 슬립을 정정하고자 하는 반대의 경우에도 슬립이 이미 작성된 후에 실질적으로 거래에 개입하게 되는 후속인수 보험자들에게 슬립의 정정을 요청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⁷³⁾.

나. 구두증거배제의 원칙과 슬립

영미계약법상 계약조항이 서면증서에 기재되는 경우 해당 증서 이외의 증거(parol evidence)를 가지고 그 계약조항을 추가, 변경 또는 부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른바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이다. '구두증거'는 모든 외부증거(extrinsic or extraneous evidence)를 포함하기 때문에, 보험에 있어서 이 법원칙은 계약내용을 전부 기재한 보험증권이 후일 발행되는 경우에 슬립과 그 보험증권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슬립과 보험증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슬립에 일치하도록 보험증권을 정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이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구성한다는 것을 용인한 경우에는 슬립이 전부(in toto) 보험증권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슬립은 보험증권을 해석하기 위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두 원칙은 쉽게 조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⁷⁴⁾.

계약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슬립과 보험증권이 모두 존재하면서 양자 사이에 모순

73) Mustill, Michael & Gilman, Jonathan, op. cit., p.37.

74) Merkin, Robert, op. cit., 1992, p. A.3.2-02.

이 있는 경우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는 슬립의 내용이 보험계약의 조건을 구성한다. 그러나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일단 보험증권이 발행되면 슬립 및 기타 모든 외부증거는 배제된다. 이는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에 따른 결과이다. 이 견해는 이 문제에 대한 선도적 판례인 *Youell v. Bland Welch*⁷⁵⁾에서 확인된다. 이 건에서 *Beldam*판사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보험자가 서명한 슬립이 당사자 사이의 원래 합의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추후 보험증권에 계약조건을 표시할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구가 슬립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보험증권이 발행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의 계약 또는 합의를 구성하는 것은 슬립이 아니라 보험증권이다.……

*Ionides v. Pacific Fire & Marine Insurance Co.*에서 *Blackburn*판사는 확정통지를 함에 있어 선박명은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험자들이 항변하였기 때문에 그 슬립은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피보험자가 선박명은 중요한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슬립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견해는 재무법원에서 추인되었다. *Kelly*판사는, 예컨대 부실고지 또는 불고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슬립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첨언하였다. “당사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계약을 증명, 부인 또는 설명하거나, 또는 해당 보험증권의 해석에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슬립을 증거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보험증권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이었던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슬립을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1906년 해상보험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계약을 설명하거나 또는 보험증권의 해석에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슬립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나의 판단으로는 이 건에서도 해당 보험증권의 해석에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슬립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견해는, 보험증권의 작성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공통의 의사(common intention)가 무엇이었던가를 증명하는 외부증거가 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5) (1992) 2 Lloyd's Rep. 127.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당사자들의 공통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보험증권에서 누락되는 경우 슬립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사실상 정정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⁷⁶⁾.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최근의 두 가지 판례가 있다⁷⁷⁾. 우선 슬립은 보험증권을 해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전통적 견해는 *HIH Casualty & General Insurance Ltd. v. New Hampshire Insurance Company & others*의 제2심(2001. 5. 21)에서 문제가 되었다. 이 건에서 해당 슬립에는 '슬립증권' (slip policy)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 슬립에는 보험계약자가 이행해야 할 특정 계약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후일 발행된 보험증권에는 그 계약조건이 삽입되지 않았다.

원보험자인 HIH(원고)는 슬립이 보험증권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슬립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슬립에 '슬립증권'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슬립을 기본계약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이며, 세부사항은 후일 발행된 보험증권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였다. '슬립증권'을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당사자들의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법원은 슬립증권에만 규정되어 있는 해당 조항이 사실상 계약조건이라고 판시하였다.

항소법원은 슬립에 이어 보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슬립은 보험증권으로 대체되고, 보험증권을 해석함에 있어 슬립을 인용할 수 없다는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데 신중하였다. 즉 일반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기보다는 주위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해석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Great North Eastern Railway v. Avon Insurance*의 제2심(2001. 5. 24)에서 원고(철도회사)는 피고(보험자)에게 1998년 6월의 열차탈선사고로 인한 영

76) Schoenbaum, Thomas J., op. cit., p. 75. 영미 특유의 배심제도의 산물인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에 대해서는 일반 계약법상 많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예외가 보험 계약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다.(John, Lowry & Philip, Rawlings, op. cit., p.216~218.)

77) Mckinnon, Phillip & Gamlin, Catherine, "There's many a slip.....", *D. J. Freeman Insurance Review*, No. 41, 2001. 9, pp.1~2.

업중단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입은 손해는 열차바퀴의 하자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하자는 담당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원고 측의 보험중개인이 제공한 보험증권에는 종업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이 포함되었다. 슬립에는 이 면책조항이 삽입되지 않았고, 파손에 대한 담보(breakdown cover)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원고는 보험증권상의 면책조항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된 것이 아니며, 이는 슬립에 규정된 파손의 담보와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원고는 슬립에서 실제로 합의된 것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보험증권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보험증권을 해석하기 위하여 슬립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했다. 항소법원은 최초의 보험증권이 1996년에 합의되었으며(보험기간은 1년), 1997년과 1998년에 갱신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이 기간 중 어떠한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으며, 보험증권에만 삽입된 해당 조항은 원고 측 대리인인 보험중개인과 보험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인되었다. Longmore판사는 *Youell v. Bland Welch*에서의 판결에 따라 계약조건의 해석을 위하여 슬립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불과 3일 사이에 내려진 두 판결이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양자는 서로 조화될 수 있다. 즉 Longmore판사는 원고 측의 보험중개인이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점을 여러 번 언급하였다. 보험중개인과 보험자는 그 해당 조건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지만, 보험증권이 발행되는 과정에서 보험중개인은 슬립에 포함된 조건을 보험증권에 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슬립을 계약서류의 일부로 인정할 당사자들의 명백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상의 두 판례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우선한다는(paramount) 것을 보여주고 있다. *Great North Eastern Railway v. Avon Insurance*에서는 당사자들이 슬립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로 인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해석을 돕는 데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법원은 보험증권이 슬립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데 소극적인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반대의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보험증권은 슬립을 대체하도록 의도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모두는 보험증권을 검토한 후 동의할 수 없는 조건이 있으면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고지의무와 슬립

보험자가 슬립에 서명한 때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중개인은 그 시점까지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슬립에 의한 대부분의 보험거래는 공동보험의 형태를 취하므로 고지의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증권의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슬립이 전액 인수되면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가 종료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만 A보험자는 슬립에 서명했지만 B보험자는 아직 서명하기 전에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고지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⁷⁸⁾.

첫째, A보험자와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장래 슬립에 서명할 모든 보험자들에게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슬립이 전액 인수되기 전에는 불완전한 것이므로 장래의 모든 서명자 뿐만 아니라 A보험자에 대해서도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보험계약자와 A보험자 사이에만 구속력 있는 계약이 존재하므로 A보험자에 대해서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B보험자에 대해서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첫 번째 대안의 경우 보험자는 위험을 평가하여 이를 거절하거나 또는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모순된다⁷⁹⁾. 두 번째 대안의 경우 서명된 슬립은 구속력 있는 계약이라는 기본원칙에 모순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

78) Merkin, Robert, op. cit. p. A.3.2-17.

79) 첫 번째 대안은 Bank Leumi Le Israel BM v. British National Insurance Co. (1988) 1 Lloyd's Rep. 71에서 Saville 판사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세 번째 대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즉 엄격한 법적 관점에서 말하면 고지의무는 각각의 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므로 보험계약자 등은 B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B보험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은 A보험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대표보험자 이외의 특정 보험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은 해당 보험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슬립상 보험자의 기재순서와는 관계없이, 즉 해당 보험자보다 먼저 인수했는가 후에 인수했는가에 상관없이 다른 보험자들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⁸⁰⁾.

그러나 세 번째 대안의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즉 B보험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B보험자가 A보험자와는 다른 보험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A보험자와는 다른 계약조건을 삽입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 하에서 보험자들이 서로 다른 계약조건에 구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법은 조건변경에 의하여 선행인수 보험자가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주로 대표보험자와 협의하고 가급적 조건변경을 피하고자 하는 관습이 일반화되어 있다. 만일 대표보험자와의 협의에 따라 조건변경이 이루어지면 선행인수 보험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대표보험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후속인수 보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자 등이 최초의 보험자, 즉 대표보험자에게 허위의 진술(부실고지)을 했지만 후속인수 보험자에게는 그 허위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후속인수 보험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구성하는지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대표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진술을 후속인수 보험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초기의 해상보험판례⁸¹⁾에서는 대표보험자에 대한 중요사실의 고지는 기타 모든 보험자에게 확장되며, 따라서 허위진술로 판명될 경우 모든 보험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시되었다. 즉 대표보험자 이후의 후속인수 보험자들은 보험청약이 대표보험자에 의하여 이미 승낙되었다는 사실에

80) Ivamy, E. R. Hardy, op. cit., p.117.

81) Pawson v. Watson(1778) 2 Cowp. 785 ; Barber v. Fletcher(1779) 1 Dougl. 306.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대표보험자가 고지 받은 사항은 후속인수 보험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보험자에 대한 사기, 부실고지 또는 불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후속인수 보험자들에 대해서도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한다⁸²⁾.

둘째, 대표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진술을 후속인수 보험자에게 명시적으로 전달하고, 따라서 모든 보험자가 그 허위진술에 따라 오도되는(misled) 경우이다.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는 없다⁸³⁾.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보험자와는 개별적으로 별개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대표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 받은 사항을 다른 보험자에게 전달할 권한을 가지지 않으며, 어떤 사항이 고지되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문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각 보험자의 의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대표보험자의 그러한 전달은 예견가능하며, 따라서 각 보험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한다는 결론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대표보험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은 후속인수 보험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현재의 법원칙이다. 특히 부실고지의 경우 대표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진술을 후속인수 보험자에게 전달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후속인수 보험자들에 대해서도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원칙에 대한 반대의 견해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안에 관한 소송에서 후속인수 보험자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2) Mustill, Michael & Gilman, Jonathan, op. cit., Vol. II, pp.471~472. 그러나 이는 각각의 보험자는 스스로 위험을 평가해야 하며, 예컨대 이전에 다른 보험자가 위험인수를 거절한 사실은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해상보험법상의 원칙에 모순되는 것이다. The Zephyr (1985) 2 Lloyd's Rep. 529, 539에서 Mustill판사는 후속인수 보험자들이 대표보험자의 숙련과 판단에 영향을 받는다는 추정을 거부하였다.

83) Merkin, Robert, op. cit., p.A.5.2-21. 실무상 슬립에 의한 계약체결 과정에서는 대표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 받은 사항을 후속인수보험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가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V. 맺음말

슬립은 런던보험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매우 독특한 보험서류이다. 슬립의 독특한 성질은 보험중개인을 통해서만 거래하는 로이즈시장 특유의 거래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슬립은 해상·항공·책임·재보험 등과 같이 주로 대형위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종목에서 사용된다.

슬립은 보험계약 성립의 직접적 증거로 인정된다. 보험자가 슬립에 서명한 때에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약이 성립하며, 보험자는 슬립에 기재한 인수비율에 구속된다. 다만 슬립의 초과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자는 슬립에 기재된 인수비율이 아니라 하향조정된 인수비율에 구속되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러한 초과인수의 관습이나 원보험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관습에 대하여 그 법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은 수백 년에 걸친 관습을 부정함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본다.

슬립에 의한 거래는 복수의 보험자가 참여하는 공동보험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각 보험자의 서명에 의하여 각각 별개의 계약이 성립하며, 각 보험자는 자기가 서명한 때의 계약조건에 구속된다. 즉 법적으로 후속인수 보험자들의 조건변경이 허용되지만, 통상 계약조건은 대표보험자와 협의하는 관습에 따라 실무상 조건변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슬립은 과거 영국에서 시행되었던 인지세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보험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는 실무계에서 인지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슬립만으로 거래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보험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는 최종적으로 1970년에 폐지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슬립과 보험증권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더라도 슬립 자체에 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슬립은 계약의 증거로 인정되며, 보험자의 계약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다만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이 발행되어야 슬립이 증거로 인정된다. 즉 슬립 자체의 증거능력은 사실상 인정되지 않으며, 슬립에 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국고수입을

위한 인지세제도의 산물로서 이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해상보험이든 아니든 현실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거래가 종료되면 사실상 보험증권이 발행될 필요가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보험자가 그 보험금청구에 이의가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룰 수 있도록 보험증권을 발행해주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보험자의 이러한 태도는 신의칙과 신용에 기초하여 움직이는 런던보험시장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보험에 있어서 슬립의 증거능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59년 재정법에 의하여 해상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 간소화된 바에 따르면, 통상의 슬립은 이를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실상 슬립을 해상보험증권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1959년 법에서 슬립은 해상보험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슬립을 해상보험증권 자체로 취급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해상보험 이외의 다른 보험종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슬립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해상보험은 기업보험으로서 상대적으로 보험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자의 명예나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현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법제도상의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슬립에 의한 계약체결 후 보험증권이 발행되고 양자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 무엇을 계약내용으로 할 것이냐이다. 이에 대하여 영국의 판례는 두 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보험증권의 정정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 측은 슬립의 조건에 일치하도록 보험증권을 정정할 수 있다는 명백한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슬립은 계약조항을 설명하거나 해석하기 위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반대의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보험증권은 슬립을 대체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추정이 성립한다.

그러나 일반 계약법상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가 허용되고 있

다. 계약의 조항이 명료하지 않고 모호한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거나 해석하기 위한 외부증거가 인정된다는 것도 그 예외 중의 하나이다.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에 대한 방대한 예외의 인정으로 영국에서 이 원칙의 폐지까지 주장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증권이 슬립을 대체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의사이다. 따라서 보험증권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계약조건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슬립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슬립이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는 결국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이 논문은 유일하게 영국의 보험시장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슬립이라는 보험서류에 관한 독특한 거래관습과 그 법적 지위를 고찰한 것으로서, 영국 보험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특히 양자 사이의 대부분의 거래가 슬립을 사용한 계약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영국의 슬립제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적하예정보험,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을 비롯한 법적 성질 등에 대하여 별개의 논제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후일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참 고 문 헌

- Bennett, Howard, "The Role of the Slip in Marine Insurance Law",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1994. 2.
- Bianca, Daniel M., "The Working of the London Market", *Lloyd's, the ILU, and the London Insurance Market*, PLI, 1990.
- Clarke, Malcolm A.,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LLP, 1989.
- Colinvaux, Raoul, *The Law of Insurance*, Sweet & Maxwell, 1984.
- Dover, Victor, *A Handbook to Marine Insurance*, Witherby & Co. Ltd., 1982.
- Ivamy, E. R. Hardy,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Butterworths, 1986.
- Legh-Jones, Nicholas, *MacGillivray on Insurance Law*, Sweet and Maxwell, 2003.
- Lewis, Stephen & Woloniecki, Jan, "Lloyd's: Brokers and the London Insurance Market", *Lloyd's, the ILU, and London Insurance Market*, PLI, 1988.
- Lowry, John & Rawlings, Philip, *Insurance Law : Doctrines and Principles*, Hart Publishing, 2005.
- Mckinnon, Phillip & Gamlin, Catherine, "There's many a slip.....", *D. J. Freeman Insurance Review*, No. 41, 2001. 9.
- Merkin, Robert, *Insurance Contract Law*, Vol. 1, Kluwer Publishing, 1992.
- _____, "The Duties of Marine Insurance Brokers", *The Modern Law of Marine Insurance*, LLP, 1996.
- Mustill, Michael & Gilman, Jonathan,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Vol. I & II, Stevens & Sons, 1981.
- O' May, Donald & Hill, Julian, *O' May on Marine Insurance*, Sweet & Maxwell, 1993.
- Parks, Alex L., *The Law and Practice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Vol. I, Cornell Maritime Press, 1987.
- Rambeth, R. J., *Templeman on Marine Insurance*, Pitman, 1986.
- Schoenbaum, Thomas J., *Key Divergencies Between English and American Law of Marine Insurance : A Comparative Study*, Cornell Maritime Press, 1999.

Thomas, Rhidian, "Perspectives on the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The Modern Law of Marine Insurance*, LLP, 199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role and legal significance of the slip in London Insurance Market. In some classes of insurance, the insurance broker writes down the details of the cover which the applicant wishes to obtain on a document known as a slip, using accepted abbreviations in order to condense the terms of the insurance onto the sheets of paper. Normally, the presentation of the slip is the proposal or offer of the contract and the initialment is the acceptance, with each underwriter being bound separately as from the time of his initialment.

Where a slip is oversubscribed, it is a binding custom of the London marine and non-marine markets that all lines are to be proportionately signed down to 100% upon the ultimate closing of the risk. This is a qualification of the general rule that an underwriter is bound to the line for which he has subscribed the slip presented to him for initialling. With regard to the legal position of a partially subscribed slip, each underwriter is bound on the terms for which he has subscribed the slip whether or not it is fully subscribed, subject only to the custom of signing-down.

In legal proceedings, the slip may be submitted as evidence to show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or for the purpose of rectification of a mistake. The parol evidence rule will not exclude the slip where it has probative value. In particular, it may provide the basis of a rectification action. But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not admissible in evidence and enforceable unless embodied in a policy.

※ Key Words : cover note, insurance broker, insurance policy, slip